

『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』 참여대상자 모집 공고

경상북도(주관기관 : 경상북도경제진흥원)에서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영업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「경상북도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 지원」 참여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2024년 8월 19일

경 상 북 도 지 사

I 사업개요

- 신청개시: 2024. 9. 2.(월)부터 사업비 소진시 까지
- 지원대상: 24년도 출산한 경상북도 소상공인 및 배우자
- 주관기관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
- 지원규모: 1,000명 정도(선착순 지원)
- 지원내용: 출산한 소상공인의 사업장 내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(연속된 6개월)
 - 소상공인이 지급한 인건비 중 월 최대 2백만원, 연속 6개월 지원(최대 1,200만원)
 - ※ 대체인력 인건비는 소상공인과 대체 인력이 협의하여 임금을 산정하며, 2024년 최저임금(시급 9,860원)보다 높아야 함.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계산 및 확인
- 신청시기 : 출산 후 6개월 이내(12월 출산자는 2025. 5. 31까지 신청)
단, 공고일 이전 출산한 소상공인은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내 신청
- 신청방법: 앱 온라인 접수(경상북도 모이소)
- 선정방법: 자격 요건 충족 및 서류 구비 완료 순 선정

II

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□ 지원대상 : 2024년도에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

- ①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
- ②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, 직전년도 매출액이 년 12백만원 이상
- ③ 직장 및 주소는 사업기간내 유지

□ 제외대상

- ①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경영지원 인건비를 지원 받고 있는 소상공인
- ② 배우자가 유급 육아휴직 근로소득자인 경우 동일기간 중복 지원 불가
- ③ 최저임금 미적용 및 최근 1년 이내 임금체불사업장, 중대재해발생 업체, 고용지원금 부정수급 발생 사업장은 지원 불가
- ④ 도내 부부 각각의 사업장 또는 다수 사업장이 있을 경우 1개소만 가능
- ⑤ 기타 경상북도, 시군, 진흥원에서 지원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
□ 지원금액 : 선지급 대체인력 인건비 중 월 최대 200만원 연속된 6개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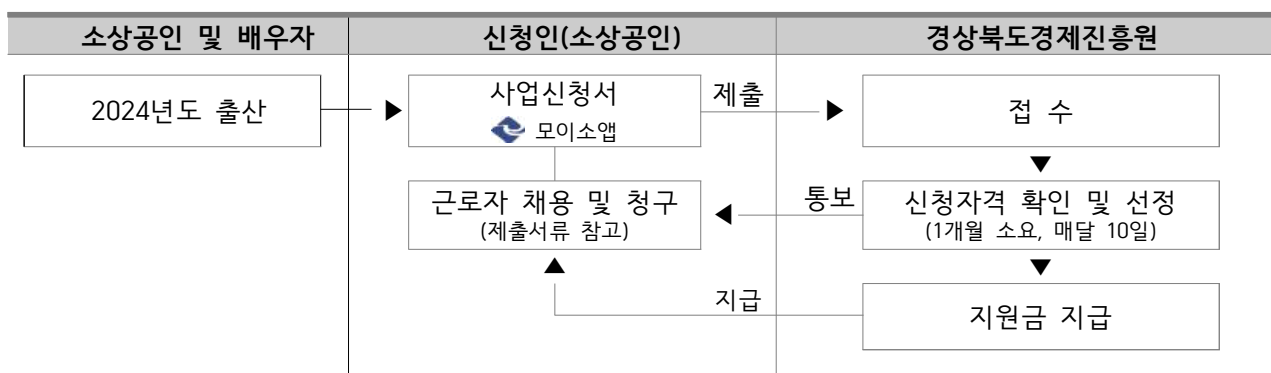
- ① 지원기간(대상선정일로부터 ~ 2025.12월): 기간중 연속한 6개월분

(대체인력 최초 근무일로부터 6개월, 인건비 지급 합산 개월 아님)

- ② 지원금액 = 해당월 급여 선지급액 중 월 최대 200만원, 1개월씩 청구하여 6개월분

(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후 소상공인 본인 1인의 대체인력 사용분에 한함)

□ 처리절차



Ⅲ

신청방법

※서류 미제출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.

- 신청시기: 2024. 9. 2.(월)로 부터 **사업비 소진시 까지**
- 신청방법: 모바일 앱 접수(경상북도 모이소)
-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

단 계	신청서류	확인 및 검토사항
(1차 선정) 대상자 신청 자격 확인		
1단계 (필수제출)	아이보듬사업 신청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	- 신청자 본인 인증 후 앱 신청페이지에서 해당내용 직접 작성 ※ 구글플레이: 모이소
	① 주민등록등본 (신청일 발급)	- 경상북도 거주지 확인 - 개인인적사항변경내용, 주민번호뒷자리 포함 ※ www.gov.kr 발급 또는 행정복지센터방문
	② 사업자등록증	- 경상북도 사업장 및 주소지 현황 확인
	③ 소상공인확인 증빙서류	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-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(직전사업연도)
	④ 매출액 증빙서류	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
	⑤가족관계증명서	
※ '25년부터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연동으로 간편 신청 확인 가능		
(2차 선정) 대체인력 채용 및 인건비 선지급 확인		
2단계	①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	- 고용주는 4대보험(국민연금,고용.산재.건강보험)에 가입, 기타 관련사항은 「사회보장법」에 준함.
	② 근로계약서	- 24년 최저임금 보다 높아야 하며, 「최저임금법 시행령」에 근거하여 계산 및 확인.
	③ 대체인력 근무일지	- 자유입출금식(적금, 펀드, 휴면, 압류방지 계좌 불가)
	④ 월급명세서 및 급여이체확인증	-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(원칙), 부정이익, 제재부가금 부가(별도)
	⑤ 통장사본	- 「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지방보조금법」에 따름.
	⑥ 부정수급 약약서 등	
지원비 지원		

※ 올해 시범사업으로 주관기관이 자격 확인을 위해 제출자료 추가요청 가능

- 선정방법: 자격여부 및 신청완료자(구비서류 제출 완료) 대상 사업비 소진시까지
 - (1차 선정) 자격요건 충족 및 신청서류 완료 순 선정
 - (2차 선정) 1차 선정자 중 자격요건 유지자 선정

- **선정발표: 개별통지(제출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)**
 - ※ 1개월 단위로 서류검토 후 다음달(익월) 10일경 선정
- **지원기간(신청일로부터 ~ 2025.12.31.): 기간 중 최대 6개월분 지급**
 - ※ 2025년 12월 말까지 대체 인력 고용 완료분에 한함.
- **지급방법** : 지급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⇨ 신청인 계좌 입금
- **지급시기** : 사업 공고일 이후 온라인 신청자 중 선착순 선정 및 월별 지원
 - ※ 자격요건확인을 위한 월별 서류 검토 후 월별 익월 말경 지급
 - ※ 2025.12월 대체 인력 인건비는 2026년 3월말까지 인건비 청구가능
- **유의사항**
 -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, 방문 및 우편 신청 불가
 -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접수하기를 바라며,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 - 신청 시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,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인에게 있음
 - 지원대상 여부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해야 하며, 불응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할 수 있음
 -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, 환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 - 선정 후 근속 확인을 위한 자료, 현장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음
 -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, 소해를 유발시킨 소상공인과 대체인력은 책임 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.
 - 한정된 예산으로 인하여 사업 신청 후 미선정 될 수 있음
 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고함
 - 기타문의 -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(☎1800-8730)